

◆ 2025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체크리스트 (김선일 세무사) ◆

2025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위한 체크리스트입니다. 이번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기한은 **2026년 1월 26일(월)**입니다. 국세청 신고도움자료(부가가치세 신고도움 서비스 등)를 적극 활용하시어 누락 없이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과세관청은 미등록사업자 관리 및 가공세금계산서에 대해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한편, 국세청은 소상공인의 경영 애로 해소를 위해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신청 없이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2개월(2026년 3월 26일까지) 연장**합니다.

직권연장 대상은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업자로, 약 124만 명이 해당됩니다.

- ① 2024년 연간 매출액 10억 원 이하,
- ② 제조·건설·도매·소매·음식·숙박·운수·서비스업 등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8개 업종 영위,
- ③ 2025년 제1기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30% 이상 감소

다만, 납부기한이 연장되더라도 신고는 반드시 법정 신고기한인 2026년 1월 26일 (월)까지 완료하셔야 하며, 직권연장 대상자에게는 별도의 모바일 안내문이 발송될 예정입니다.

아울러, 직권연장 대상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경영상 어려움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최대 9개월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수출기업 등 세정 지원 대상자가 신고기한 내 환급을 신청(첨부서류 포함)하는 경우에는 환급금이 신속하게 지급될 예정입니다.

1. 부가가치세 신고 일반 (홈택스 자료와 프로그램으로 작성하는 신고서 금액 이중 체크)

확인대상		확인여부
매출	(국세청 홈택스) 전자세금계산서 및 전자계산서 금액과 합계표 및 신고서 금액 일치 여부	
	전자세금계산서 및 전자계산서 외 종이로 이를 수령한 금액과 합계표 및 신고서 금액 일치 여부(임대료 등 월별 매수 확인) - 신고기간을 확인하여 예정신고를 한 경우 3분기(7-9월, 총 3장),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하반기(7-12월, 총 6장)	
	(국세청 홈택스) 신용카드 매출금액과 단말기 매출금액 일치 여부와 이에 따른 신고서 금액 일치 여부(홈택스에 조회되지 아니하는 핀테크 금액 등 주의), 세금계산서(계산서)와 신용카드가 이중으로 결제된 경우 중복 매출에 유의(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 발행금액 집계표상 세금계산서 발급 내역 별도 기재)	
	(국세청 홈택스) 현금영수증 매출내역과 단말기 자료에서 집계된 현금영수증 발행내역 일치 여부(취소 분 검토)	
	현금매출, 계좌이체, 핀테크 결제 등을 통해 비 사업자로부터 받은 현금매출 분 신고 여부(사업용계좌 입금내역 확인)	
	플랫폼사업자(야놀자 등) 및 배달대행업체(배달의민족 등) 매	

	확인대상	확인여부
	<p>출내역 신고 여부(국세청 신고도움서비스 및 매입세금계산서 검토로 매출 구조 파악 - 국세청 자료 및 실제 업체자료(각 사이트 별 ID/PW 수령)와 반드시 비교하여 국세청 자료에서 누락될 수 있는 플랫폼들 확인)</p> <p>각 지역별 지역화폐 확인(제로페이의 경우 홈택스에서 조회되거나 기간을 확인하여 신고, 어플 등으로 결제한 경우 단말기에서 조회되거나 상품권의 경우 별도로 집계 및 조회되지 않기 때문에 신고안내문 확인하여 소액이라도 있는 경우 환전내역 요청하여 신고)</p>	
	<p>영세율 매출이 있는 경우 수출 통관내역(기본적으로 홈택스에서 조회되는 자료로 신고를 해야함. 실제 선적일 및 기적일을 확인하여 일치하지 않는 경우 구분하여 신고),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이에 따른 영세율 세금계산서가 적법하게 발행되었는지 검토) 전자 발급내역 등과 일치여부</p>	
	<p>영세율 매출이 있는 경우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영세율 제출서류 첨부 여부(수출신고필증, 내국신용장, 구매확인서, 수출입계약서, 외국환입금증 등)</p>	
	<p>선하증권(B/L) 상의 선(기)적일자를 반드시 확인하여 과세표준 계산에 오류가 없어야 하며, 국세청 홈택스 상 수출신고 필증을 기준으로 업체자료와 대사하여 처리(여전히 회계처리 등을 위하여 선적일 또는 기적일 확인)</p>	
	<p>개발자의 영세율 신고를 위한 구글 및 애플 등의 매출자료에서 해당 플랫폼의 수수료를 제외하지 않고 총 매출액으로 신고해야함을 유의</p>	
	<p>음식·숙박용역의 경우 봉사료를 구분(부가가치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요건 충족)하여 과세표준 신고하는 경우 과세관청 사후관리 대상이기 때문에 봉사료 지급대장 등 작성여부 확인 (봉사료가 전체가액의 20%를 초과한 경우 원천징수 해야함)</p>	
	<p>부가가치세법상 간주공급에 해당하는 금액 신고 여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가공급, 개인적 공급, 사업상 증여 등 세무사사무실에서 확인 할 수 없는 자료는 업체에게 미리 충분히 안내 - 폐업자의 경우 폐업시 잔존재화 확인 <p>(사업의 양수도 여부, 단순 폐업 확인 후 감가상각자산 확인)</p>	
매입	<p>면세·간이(영수증 발급대상 간이과세자를 의미)·폐업한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 등 관련 매입세액을 매입세액 공제대상에서 제외하였는지 여부</p>	
	<p>사업과 무관한 신용카드 수취내역을 매입세액 공제대상에서 제외하였는지 여부</p> <p>(국세청 신고안내문 상 가사경비 집계된 내역 확인)</p>	
	<p>간이과세자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및 신용카드 매입세액 공제 검토(간이과세자의 경우 직전연도 공급대가의 합계액이</p>	

	확인대상	확인여부
	4,800만원 이상~1억400만원 미만인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 간 이과세자의 경우 가능하며 이는 사업자등록증 및 홈택스상 사업자등록 상태를 조회하여 확인할 것)	
	세금계산서 및 신용카드매출전표에 의한 매입세액 이중공제 신고하지 않음에 유의(중복공제에 따른 사후관리 대상)	
	휴일 및 업무시간을 제외한 시간대에 사용한 신용카드 수취내역을 매입세액 공제대상에서 제외하였는지 여부 (무조건 불공제 대상은 아니기 때문에 실질 판단)	
	접대목적(기업업무추진비)으로 지출한 신용카드 내역을 매입세액 공제대상에서 제외하였는지 여부	
	매출내역, 기간별 매입 내역을 비교하였을때 가공 및 허위 매입자료로 예상되는 금액 확인 여부 (실질 판단) - 단기간 특정거래처로부터 고액거래 발생 - 고정거래처가 아닌 자와의 발생된 고액거래 - 매입과 매출이 동시에 발생한 거래 - 해당업종과 무관한 사업자와의 거래 - 원거리 사업자와의 거래 - 과세기간 종료 월에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거래	
	겸영사업자의 경우 공통 매입세액을 적정 안분하였는지 여부 ① 실질에 따른 매입세액 구분 (과세분/ 면세분) ② 구분이 되지 아니하는 공통매입세액만 안분할 것 (임의로 공통매입세액을 조정하지 말 것)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구입·유지·임차비용과 관련된 매입세액을 공제대상에서 제외하였는지 여부 (매입세금계산서 큰 금액 검토)	
	의제매입세액 공제 적용 시 공제한도액(한도액 계산의 금액은 과세공급가액)을 초과하지 않았는지 여부	
	폐자원 매입세액 공제 적용 시 일반과세자로부터 구입한 폐자원을 공제대상에서 제외하였는지 여부	
	환급 발생 시 과세관청의 환급 검토 서류 수취하였는지 여부	
기타	직전연도 공급가액의 합계액(면세수입금액 제외)이 사업장별 10억 초과 개인사업자가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세액 공제를 잘못 적용하였는지 여부 및 적용배제 업종이 공제받았는지 검토 -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의 경우 사업장별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판단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세액 공제 적용 대상자의 한도 초과 여부 (연간 1,000만원) - 1기 적용금액 확인	
	(국세청 홈택스) 실제 예정고지 세액 기재 여부 (중간예납 직권 취소 된 경우와 법인의 중간예납 주의)	
	확정신고 시 미환급 세액란에 예정신고 시 실제 환급받은 세액을 중복 기재하지 않았는지 여부	

확인대상		확인여부
	예정신고, 조기환급 신고한 내역은 확정신고시 제외하여 신고하여야 하며 이중공제에 유의(국세청 감사지적 사례)	

2. 부가가치세 신고 항목별 체크리스트 (국세청 - 확정신고 안내)

(1) 사업용 고정자산 매입세액

확인대상		확인여부																	
공제요건	사업자등록 신청 이후 매입 여부(사업자번호로 수취) ◦ (예외) 고정자산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 등록신청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까지 역산한 기간 내의 매입세액은 공제																		
	사업과 직접 관련성이 있는지의 여부 ◦ 구입목적, 사업의 연관성, 사용실태 등 확인(매입세액 공제시 추후 간주공급대상 유의)																		
공제시기	고정자산을 공급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예정·확정신고시 공제(사용개시일이 아님)하였는지 여부																		
차량에 대한 공제 검토	공제 가능 차량 ① 영업용 차량(개별소비세 과세 여부 불문) : 운수업, 자동차 판매업, 자동차임대업, 운전학원업, 경비업(기계경비업무)의 출동차량 및 이와 유사한 업종에 직접 영업으로 사용되는 것(차량이 없는 경우 사업을 영위할 수 없음) ② 사업용 차량으로 개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차량 ex. 지프형이 아닌 9인승 이상 승합차, 화물차, 125cc 미만 오토바이, 1000cc 이하 소형차, 길이가 3.6미터 이하이고 폭이 1.6미터 이하인 전기차, VAN형 차량 등																		
	<table border="1"> <thead> <tr> <th colspan="2">구 분</th> <th>개별소비세</th> <th>부가세공제여부</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4">사업용</td> <td rowspan="2">영업용</td> <td>비과세</td> <td>여</td> </tr> <tr> <td>과세</td> <td>여</td> </tr> <tr> <td rowspan="2">비영업용</td> <td>비과세</td> <td>여</td> </tr> <tr> <td>과세</td> <td>부</td> </tr> <tr> <td colspan="2">비사업용</td> <td>불문</td> <td>부</td> </tr> </tbody> </table>		구 분		개별소비세	부가세공제여부	사업용	영업용	비과세	여	과세	여	비영업용	비과세	여	과세	부	비사업용	
구 분		개별소비세	부가세공제여부																
사업용	영업용	비과세	여																
		과세	여																
	비영업용	비과세	여																
		과세	부																
비사업용		불문	부																
토지관련 매입 검토	토지의 조성 등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제외하였는지 여부 ◦ (토지의 조성 등) 토지원가, 토지의 취득을 위해 지급한 중개수수료, 감정평가비, 컨설팅비용, 건물신축을 위한 부지 및 택지조성 공사비용 등																		
면세사업 관련 매입검토	면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을 불공제 처리하였는지 여부																		
공통 매입세액	과세·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고정자산인 경우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을 하였는지 여부 또는 이전에 취득한 자산의																		

확인대상		확인여부
안분	경우 재계산 하였는지 여부	
제출서류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와 이에 따른 적격증빙서류 ◦ 고정자산 취득하여 환급 대상이 된 경우 환급검토서류 준비	

(2)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 제출 매입세액 검토

확인대상		확인여부
공제 요건 검토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되었는지 여부 ◦ 사업과 무관한 가사경비 또는 접대비와 관련된 매입세액 불공제	
	사업자로부터 수취하였는지 여부 ◦ 폐업자, 영수증 발급대상 간이과세자(사업자등록증 또는 홈택스 사업장현황 조회), 면세사업자로부터 결제한 신용카드 등 매입세액 불공제	
	다음의 업종에 해당되는 사업자와의 거래분에 대해 불공제 처리 하였는지 여부 ① 목욕·이발·미용업 ② 여객운송업(전세버스 제외) ③ 입장권 발행 경영사업 ④ 미용목적 성형수술, 피부관련시술 등 ⑤ 수의사 제공하는 동물의 진료용역 ⑥ 무도학원, 자동차운전학원 등	
	사업자 본인 카드(타인 명의는 제외하나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여부 불문)로 사용하고 매출전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 ◦ 개인사업자의 경우 종업원, 가족 명의도 가능 ◦ 법인 명의 또는 소속 임원 명의 가능	
	국세청 홈택스에 사업용 신용카드로 등록되어있는 내역을 기타 신용카드로 신고하였는지 확인	
	기타 신용카드 신고 시 카드번호 확인 여부	
	매입세금계산서와의 중복 분을 제외하였는지 여부	
	신용카드 등 결제 승인된 후 취소 건을 제외하였는지 여부	
	신고안내문 상 가사경비 등으로 의심되는 금액 확인 여부	
	비정상적인 사용 등으로 의심되는 금액 확인 여부	
공제 시기	신용카드 등을 통하여 공급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예정·확정신고 시 공제(사용개시일이 아님)하였는지 여부	
제출 서류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를 제출하였는지 여부	

(3) 의제매입세액공제 검토(간이과세자 적용 안됨)

확인대상		확인여부	
공제요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면세로 공급받은 농·축·수·임산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농산물 등을 원재료로 하여 창출된 재화·용역의 공급이 과세되는지 여부		
공제시기	농산물 등을 공급받은 날이 속하는 예정·확정신고 시 공제하였는지 여부		
매입가액 적정여부	매입가액 계산 시 운임(부가가치세 포함)등 부수비용을 제외하였는지 여부		
	농산물 등을 수입한 경우 관세의 과세가격을 수입가격으로 적용하였는지 여부		
	과·면세 겸영하는 경우 실지 귀속에 따라 공제대상 여부를 구분하되 불분명한 경우 안분계산하였는지 여부		
	제조업 외의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계산서 등을 발급할 수 없는 농어민과 직접 거래분에 대한 매입가액을 제외하였는지 여부		
공제율 검토	일반업종 영위 사업자	2/102	
	제조업 영위 사업자	기타 제조업	4/104
		과자점업, 도정업, 제분업 및 떡방앗간을 경영하는 개인사업자	6/106
		법인(중소기업)	4/104
		법인(중소기업 외)	2/102
	음식점업 영위사업자	법인사업자	6/106
		개인사업자	해당과세기간의 과세표준 2억원 초과 8/108 해당과세기간의 과세표준 2억원 이하 (9/109)
과세유휴장소경영자		2/102	

확인대상			확인여부	
한도율 검토	구 분		한도	
			음식점업	기타
	법인사업자		50%	
	개인	과세표준 1억 원 이하인 경우	75%	65%
과세표준 1억 원 ~ 2억 원		70%		
과세표준 2억 원 초과		60%	55%	
재계산여부	매입세액으로 공제한 면세농산물 등을 그대로 양도, 면세사업에 사용 또는 보관 중 불량등의 이유로 그대로 처분하는 경우 그 공제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였는지 여부			
제출서류	의제매입세액공제 신고서, 의제매입세액 공제 적격증빙 여부			

(4) 대손세액공제 검토

확인대상		확인여부
공제요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상매출금이나 그 밖의 매출채권(부가가치세 포함)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으로서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 ② 외상매출금 또는 미수금과 관련하여 받은 「어음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③ 외상매출금 또는 미수금과 관련하여 받은 「수표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 ④ 대여금 및 선급금으로서 「민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 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⑤의2 「서민의 금융 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무조정을 받아 신용회복지원 협약에 따라 면책으로 확정된 채권 ⑥ 「민사집행법」 제102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⑦ 물품의 수출 또는 외국에서의 용역제공으로 발생한 채권으로서 「외국환관리 법령」에 의하여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은 것(법인세 및 소득세법상 대손요건 삭제와 함께 삭제) ⑧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⑨ 부도발생일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과 외상매출금(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함). 다만, 당해 사업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것 제외 	

확인대상		확인여부
	→ 저당권 설정된 채권최고금액을 초과하는 부도수표.어음금액에 대해서는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함(부가통칙 17의2-63의2-4) ⑨의2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으로서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외상 매출금 등(다만, 특수관계인 거래는 제외)	
공제시기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였는지 여부 ◦ 확정신고 시에만 대손세액공제 신청 가능	
금액검토	대손세액 = 대손금액(부가가치세 포함) X 10/110	
기한 검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로부터 10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확정된 대손세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제출서류	제출서류가 적정하게 구비되었는지 여부 ① 파산 : 매출(입)세금계산서, 채권배분계산서 ② 강제집행 : 매출(입)세금계산서, 채권배분계산서, 배당표 ③ 사망·실종 : 매출(입)세금계산서, 법원 판결문, 채권배분계산서 ④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 매출(입)세금계산서, 법원이 인가한 회생계획인가 결정문 등 ⑤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 경과 어음 : 매출(입)세금계산서, 부도어음 ⑥ 상법상의 소멸시효: 매출(입)세금계산서, 인적사항, 거래품목, 거래금액, 거래대금의 청구내역 등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